

## 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6. (검사서 통보일)

3. 제재조치내용

| 제재대상  | 제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 관   | 기관주의, 과태료(2,520만원) 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설계사 | 업무정지 30~90일 : 17명<br>과태료(1,600만원) : 1명 |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-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 등 16명은 2021.12.20.~2024.11.15. 기간 중 ◎◎보험㈜ ‘◇◇보험’ 등 87건의 생명보험계약 및 17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△△△ 등 97명에게 총 477.0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8조 제1호

(2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
(허위·가공의 보험계약 모집)

-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-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2021.11.23.~2024.10.29.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△△△ 등 5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○○보험(주) '◇◇보험'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(모집수수료 66.0백만원, 납입보험료 104.7백만원)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6호